

#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에 관한 연구

‘무극도(無極道)’ 사례를 중심으로

---

권동우

영산선학대학교 부교수, 종교학/신화학 전공

susanowo0428@gmail.com

---

- I. 머리말
  - II. 학계의 연구동향과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
  - III. 1935년 이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탄압 양상
  - IV. 심전개발운동과 ‘유사종교 해산’의 연관성
  - V. 무극도의 사례로 본 ‘유사종교 해산’의 실상
  - VI. 맺음말
-

## I. 머리말

---

한국의 근대종교에 대한 연구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은 1935-1938년 사이에 유사종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근거가 바로 ‘유사종교해산령(類似宗教解散令)’이라고 말해왔다. 특히 1936년 보천교(普天敎)와 무극도(無極道)가 경찰에 의해 해산된 것을 필두로 많은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유사종교해산령’이 있었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한국 근대종교를 이해함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용어가 바로 ‘유사종교해산령’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에서 선포한 법령 어디에서도 ‘유사종교해산령’은 찾아볼 수 없다. 선행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더라도 ‘유사종교해산령’이 있었다는 주장은 많지만 정작 그것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시점에 선포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다.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또 그것이 유사종교 해산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있는데, 정작 그 법령의 실체는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근대종교 연구의 상황에 대해 고병철은 “조선총독부가 신종교를 해산시키기 위해 <종교 해산령>이라는 별도 법규를 제정·시행했다거나 모든 신종교단체에 일괄적으로 해산령을 선포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sup>1</sup>라고 하면서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던 ‘유사종교해산령’의 존재에 대해 법령이 없었다는 점이나 유사종교에 대한 일괄적 탄압이 없었다는 점을 밝힌 것은 연구사적으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할

---

1 고병철,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박문사, 2019), 390쪽.

수 있다. 다만 이런 문제 제기 이후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제로 ‘유사종교해산령’은 법령으로 실재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당시 많은 종교단체가 유사종교로 규정되고 강제로 해산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그것이 구체화된 법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연구자들은 ‘유사종교해산령’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그것이 마치 실재했던 것처럼 인식해 왔을까?

논자는 그 원인으로 ‘종교유사단체 해산 명령’이나 ‘총철폐령’ 등의 용어가 근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과 해방 후 일제에 의한 한국 신종교 탄압을 강조하려는 연구자들의 신념이 ‘유사종교해산령’을 실체화시킨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용어가 근대 한국종교 연구자들을 어떤 오류에 빠지게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일제강점기에 언론을 통해 드러난 ‘해산령’이나 ‘총철폐령’ 등의 실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비록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법령의 실체가 없었다고 해서 조선총독부가 유사종교를 탄압·해산한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사종교 탄압과 해산을 주도했던 경찰 조직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서 유사종교를 탄압·해산시켰을까? 이 부분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일제의 유사종교 탄압·해산을 ‘민족종교’ 또는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으로 검토해 온 경향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보고자 한다. 물론 본고의 시도가 일제의 ‘민족종교 탄압’이라는 관점을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해산이 큰 틀에서 민족종교 또는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과 연동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해산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당시 실제로 행해진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해산의 실상에 한 걸음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제의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해산은 1935-1936년 증산교계 교단의 해산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보천교를 기점으로 일제의 유사종교 탄압·해산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해 왔다. 본고에서는 무극도에 대한 탄압과 해산 시도의 과정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실제 유사종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해산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Ⅱ. 학계의 연구동향과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

근대 한국종교 연구에 있어서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다지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국내 한국 신종교 분야 연구는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분야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선구적인 업적을 일궈 온 이강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36년(병자)에 차교주가 57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되니 교세는 극도로 침체되었다. 동년에 정부로부터 증산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게 되니, 교인들은 뿔뿔이 해산하고 십일전과 교종 등은 관에서 강제 압수하여 공매처분을 하게 되었다.<sup>2</sup>

---

2 이강오, 「보천교」, 『논문집』 8호(1966), 33쪽.

위 논문에서는 증산교단, 특히 보천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해산명령'이 특정 법령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유사종교해산령'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상희의 다음 글을 보자.

일제는 드디어 총독부로 하여금 '유사종교'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몇몇 종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교를 해산시켰다. 1938년에 해산령이 내리기까지 거의 매년 4에서 7개의 종단이 발생했다.<sup>3</sup>

여기서 총독부가 유사종교에 대해 '해산령'을 내렸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유사종교해산령이 1938년에 내려졌다고 했는데, 왜 1938년을 특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국종교』에서 〈한국신흥종교자료〉를 정리할 때 이현택은 “당시 왜정은 이들의 집단활동을 민족의식을 고집하고 소위 황민화 정책에 불복종하는 준민족운동이라고 규정하여 대소증산교단에 심한 탄압이 계속되자 이상호는 부득이 동화교를 해산하였다”<sup>4</sup>라고 했고, 홍범초는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국내의 사상통제를 단행할 때 증산 신도는 민족의식을 고집하므로 그 교단 운동을 준민족운동으로 규정하여 병자(1936)년 4월에 총독부로부터 증산계 각 교단에 폭압명령을 내렸다”라고 했다.<sup>5</sup> 이들은 1936년 증산계 교단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탄압'이나 '폭압명령'이 있었고, 그 성격이 '민족의식을 고집하는 준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일제에 의한 증산교계 교단의 탄압을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3 문상희, 「한국의 신흥종교」, 『한국종교』(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3), 302쪽.

4 이현택, 「증산교」, 『한국종교』 8(1983), 253쪽.

5 홍범초, 「증산계 삼덕교」, 『한국종교』 11·12(1987), 213쪽.

시야로 고찰하는 초창기 인식이다.

이처럼 1980년대까지 연구자들은 유사종교에 대한 해산령, 폭압명령, 해산명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제에 의한 유사종교 탄압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했지만,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개념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증산교계 교단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해산이 '유사종교해산령'을 근거로 이뤄진다는 주장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태극도」에서는 “1936년 조선총독부가 증산교 계열의 신종교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단행하였던 〈유사종교해산령〉에 의해 교당 건물이 철거되고 본부는 해체되다시피 하였다.”<sup>6</sup>라고 했고, 또 「보천교」에서도 “1936년 차경석이 죽고 조선총독부가 〈유사종교해산령〉을 선포함에 따라 교단이 해체되고 말았다”<sup>7</sup>라고 하여, 총독부에 의해 공식법령이 '선포'된 것을 기정사실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 사전 「증산교」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증산교는 보천교에서의 차경석의 천자등극의 실패와 그에 따른 분열, 그리고 1938년 조선총독부가 선포한 유사종교해산령으로 점차 위축되거나 해산되기 시작하였다”<sup>8</sup>라고 했고, 또 「증산교단통정원」에서도 “증산교는 일제강점기에 100개에 가까운 교파와 수백만의 신도를 헤아릴 정도로 크게 일어났다. 그렇지만, 1938년 조선총독부에서 〈유사종교해산령〉을 내리자 교세가 크게 위축되었다”<sup>9</sup>라고 했다.

이와같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증산교 관련 항목에서는 일관되게 '유사종교해산령'에 의해 증산계 교단이 탄압과 해산의 시련을 겪었다고

6 노길명, 「태극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1991), 22쪽.

7 노길명, 「보천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1991), 874쪽.

8 노길명, 「증산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1991), 187쪽.

9 노길명, 「증산교단통정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1991), 190쪽.

주장한다. 그런데 「태극도」와 「보천교」에서는 1936년, 「증산교」와 「증산교 단통정원」의 경우 1938년에 ‘유사종교해산령’이 선포됐다고 하는 등 법령 시행 시기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항목들이 모두 노길명한 사람에 의해 기술됐다는 점인데, 그는 최초로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이것이 실제 법령으로 선포됐던 것처럼 기술하면서도, 정작 그 시행 시점에 관해서는 혼란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후 연구자 사이에서 ‘유사종교해산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한 종교탄압과 해산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정착된다. 다만 이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유사종교해체령’<sup>10</sup>이나 ‘종교단체해산령’<sup>11</sup>, ‘유사종교단체 해산령’<sup>12</sup> 등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는 마치 조선총독부가 유사종교를 일괄적으로 탄압한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정작 ‘해산령’이라는 법령 선포의 유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혼재되면서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사종교해산령’은 한국근대종교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경원은 “1936년 4월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증산종교운동에 대해

10 윤이흠은 「일제강점기의 민족종교운동」에서 “일제는 더욱 심하게 종교탄압을 가해서, 결국 1936년 〈유사종교해체령〉을 내리게 된다. 이로 인해 모든 민족종교들이 해체되는 쓰라림을 겪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노길명 외, 『한국민족종교운동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03), 203쪽).

11 이경원은 “끊임없는 일제의 탄압과 종교단체해산령(1936) 그리고 차경석의 사망으로 교세는 급속히 하락하여 오늘날은 친구파로 나뉘어 겨우 그 명맥만을 이어오고 있다”(이경원, 「한국 근대증산교단의 민중·민족운동」,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2(2012), 152-153쪽)라고 했고, 김탁도 “올해년(1935) 12월 24일에 조선총독의 종교단체해산령에 따라 무극도는 해산되는 운명에 처했고”라는 등 ‘종교단체해산령’의 표현을 사용했다(김탁, 「무극대도의 예언사상과 특성」, 『태인 무극대도의 역사·문화적 회고 및 전망』(사단법인 정음역사문화연구소·러시아아그로상생연구소, 2019), 107쪽).

12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의 연구: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184쪽.

민족운동으로서의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종단에 대한 해산령을 선포하였다”<sup>13</sup>라고 하여 앞서 이현택과 홍범초가 증산계의 종교운동을 ‘준민족운동’으로 보았던 관점을 ‘민족운동’으로 강화했다. 또 조선총독부의 천도교, 유림, 증산계 교단에 대한 탄압을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한 성주현의 경우 “보천교가 증산교계 교단을 대표하여 한때 1백만 교도의 교세를 형성하였으나 1938년 조선총독부의 해산령에 의해 해체되었다”라고 했다.<sup>14</sup> 유사종교해산령이 1938년에 선포됐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결과, 보천교 해산이 1938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박광수의 경우 “국내의 우수한 민족종교운동을 ‘유사종교’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족종교의 신앙과 종교문화를 뿌리채 부정하고 대종교 및 보천교 등을 종교단체로 가장한 항일독립운동단체로 불법화시킴으로써 종교에 대한 탄압과 해체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특히 1930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민족종교를 모조리 해산시켰으며”<sup>15</sup>라고 주장했다. 앞선 주장들을 계승하면서도 ‘조선총독부가 민족종교를 항일독립운동단체로 규정’했다는 적극적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사종교해산령’이 1930년에 시행되었다거나 민족종교가 모조리 해산됐다는 등 근거 없는 논리가 폭주하고 있다.

‘유사종교해산령’은 1990년대 노길명 이후 일제에 의한 민족종교 탄압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리고 이 용어는 조선총독부에서 일괄적으로 유사종교를 ‘탄압·해산’시켰다는 인식과 더불어 실제로 법령이 선포된 것 같은 인식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유사종교해산령’의 시행 시점

13 이경원, 『한국신종교와 대순사상』(도서출판문사철, 2011), 30쪽.

14 성주현,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선인, 2013), 355쪽.

15 박광수, 「일제강점기(1910-1945)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사회 종교지형의 변화」, 『한국신종교의 사회운동사적 조명』(집문당, 2017), 27쪽.



을 1930년, 1936년, 1938년으로 표현하는 등 탄압의 일괄성, 법령의 존재 여부, 시행 시기를 둘러싼 혼란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가운데 그 구체 법령을 확인하거나 시행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왜 연구자들은 이렇게 ‘유사종교해산령’을 마치 실체화된 개념인 양 사용해 온 것일까? 이는 노길명에 의해 제시된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강력한 가공(假空)의 개념을 그 근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탓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는 권위에 의지해 연구자들은 이 개념을 실재적인 것인 양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사종교해산령’을 일체에 의한 민족종교 탄압·해산의 상징으로 고착화하고 실체화해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유사종교해산령’은 1990년대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성된 개념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이 용어의 실체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일체의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과 해산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실제 유사종교의 탄압과 해산의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당시의 조선총독부 자료와 언론의 보도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Ⅲ. 1935년 이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탄압 양상

일체는 을사늑약 이후 종교에 대한 관리를 위해 통감부 체제에서 1906년 11월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통감부령 제45호)을 공포했고, 1915년 8월 <포교규칙>을 공포한다. 특히 <포교규칙>에서는 당시 ‘공인종교’의 범위를

신도·불교·기독교로 한정했다. 그리고 동 규칙 제15조에서는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교유사의 단체로 인정되는 것에 본령(本令)을 준용(準用)할 수 있다”고 하여 ‘종교유사의 단체’라는 표현으로 유사종교의 개념을 처음 규정한다.

이렇게 조선총독부는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를 구분하고,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공인종교는 학무국 종교과, 비공인종교는 경무국 곧 경찰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3·1만세운동으로 무단통치의 식민지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본 정계와 신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헌병대 대신 경찰력을 강화해서 한국사회를 통제하고자 했고, ‘종교유사단체’도 또한 경찰의 통제 아래 둔 것이다.

아오노 마사아키(青野正明)는 조선총독부가 1915년 <포교규칙>을 통해 비공인종교로 규정된 ‘유사종교’에 대해서는 ‘회유(懷柔), 비밀결사에 대해서는 ‘취체(取締)’의 두 가지 방식을 취했는데,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취체’의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sup>16</sup> 천도교가 3·1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총독부의 유사종교에 대한 통제 방침이 ‘취체’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19년 이후 총독부의 유사종교에 대한 취체의 경향을 살펴보면 1923년의 백백교의 횡령사건이나 1926년 무극대도의 보안법 위반, 1919년부터 1926년까지 보천교의 보안법 위반 사건 등 일부 특정 종교와 관련자에 대한 ‘취체’와 ‘구속·기소’는 있더라도 대부분의 유사종교 전반에 대해 해산을 전제로 한 탄압의 태도는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총독부에서 1928년 발행한 『朝鮮の犯罪と環境』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16 青野正明, 『帝國神道の形成』(東京: 岩波書店, 2015), 318-319쪽; 青野正明, 『植民地朝鮮の民族宗教』(法藏館, 2018), 143쪽.

조선인 사이에는 각종의 신앙단체가 있으며, 天道敎는 그 가운데 있어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자가 14-15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버금가는 세력이 侍天敎로 3-4만명, 普天敎는 약 2만명, 靑林敎는 약 1만4천명의 신자가 있다. 그 외에도 太極敎, 人道敎, 太乙敎, 太侖敎, 大宗敎, 檀君敎, 孔子敎, 箕子敎, 大和敎, 濟愚敎, 濟世敎, 咩哆敎, 覺世敎, 龍華敎, 仙道敎, 白白敎, 人天敎, 崇神人組合, 崇神敎會 등이 있으며, 모두가 다소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 人智가 아직 미개한 조선인 사이에서는 미신의 힘이 매우 강하고, 이른바 淫祠邪宗을 신앙하는 자가 적지 않다. 愚民을 惑하는 巫女, 그 외 각종의 加持祈禱도 또한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보급과 더불어 종교의 감화에 의해 조선인을 정신적으로 선도해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sup>17</sup>

조선총독부는 유사종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이들 교단의 신도들을 교육과 기성종교의 감화에 의해 선도해 가는 방향을 더 선호했다.<sup>18</sup>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계몽을 추구하는 인사들은 유사종교가 민심을 유린하는 미신사교(迷信邪教) 또는 음사사교(淫祠邪教)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 통제대책의 수립을 요구했다.<sup>19</sup> 하지만 이런 요구가

17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犯罪と環境』(朝鮮總督府, 1928), 102-103쪽.

18 靑野正明, 『殖民地朝鮮の民族宗教』(京都: 法藏館, 2018), 145쪽; 고병철, 앞의 책(2019), 380쪽.

19 「사이비적 신자」, 《매일신보》, 1921년 2월 22일자; 「僞講議詐의 괴종교 영터러없는 야마 시수단으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뺏아먹어」, 《매일신보》, 1924년 4월 5일자; 「흥치敎聲討盛況 聲討會組織은 警察이 禁止해」, 《동아일보》, 1925년 2월 11일자; 「玉皇上帝가 强姦 흥치교 경감사의 흥치 가튼말, 우리교를 믿으면 못할일이 업다고 선전」, 《동아일보》, 1925년 2월 20일자; 「靑年團體 言論機關 聯合大會, 흥치撲滅과 其他를 決議」, 《동아일보》, 1925년 6월 27일자; 「미신타파의 금일에 경신교 창립의 괴문」, 《매일신보》, 1927년 10월 1일자; 「우민을 무혹하는 자칭 우수도인 인천교를 전도타가 무전취식으로 피소」, 《매일신보》, 1929년 8월 31일자; 「검사가 유죄 인정코 예심회부 邪惡白白敎의 罪狀」, 《매일신보》, 1930년 7월 22일자; 「迷信이 낫는 犯罪 嚴重한 制裁를 加하라」, 《매일신보》, 1930년 9월 5일자 등.

조선총독부의 취체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위의 선도 방향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그렇다면 일제의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해산’이 본격화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이에 대해 고병철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조선총독부의 신종교 통제가 강화되고, 신종교에 대한 해산정책은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 부임하면서 강화됐다고 주장했다.<sup>20</sup> 물론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 시국의 변화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일본과 한국 내 사상통제와 치안강화, 또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운동(國民精神總動員運動)로 전환 등 시국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사종교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30년대 한국사회에 적색운동(좌익)과 민족운동(우익)이 농민층과 사회저변에 확산하던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유사종교가 이러한 사상운동의 근거지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국의 변화가 유사종교에 대한 실질적인 ‘탄압·해산’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에 있어서는 포교규칙에 의해 종교에 관해서는 상당한 단속과 감독을 행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곧 규정하는 종교 외의 유사단체가 60여의 다수를 넘고 있다. 이 가운데에 유력한 단체도 2-3개 있는데, 그 중에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단체도 있어 자기들의 교도 다수를 표방하면서 왕성하게 선전하며, 농민으로부터 착취를 하는 것들도 있다. 이곳 60여의 종교유사단체 아래 귀의하는 신도는 전 조선에서 20만 정도로 추산된다. 총독부 당국은 이들에 대한 단속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민중의 智力 관계도 있으므로 조급하게 이들에게 철저를 기하는 것은 至難한 상황이므로 가급적

---

20 고병철, 앞의 책(2019), 380-388쪽.

이에 대해 단속과 감독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모로 연구 중이라 한다.<sup>21</sup>

경무국의 유사종교 단속 방침에 대한 위의 기사를 통해 볼 때, 1932년 시점에는 유사종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방침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조급하게 이들에게 단속을 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1930년대 이후 유사종교에 대한 경무국의 검거와 단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표1에 정리된 것처럼 1931년 이후 유사종교 관련 간부들이나 교도들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유사종교 단체의 간부나 교도의 '범죄사상(犯罪史上)의 흑세운동'에 대해서는 <보안법>이나 <경찰범처벌령>에 의해 기소 및 처벌이 행해지고 있었다. 고병철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보안법>과 <경찰범처벌령> 위반을 사례로 특정 개인을 단속하는 방식은 앞서 밝힌 1920년대

표1-「朝鮮在來의類似宗教に関する調査」(『思想彙報』 제10호, 1937)

소속/지역	이름	죄명	일시	구형
天道教/충남 서천군	崔昌奎	보안법 위반	1931.2.28	징역4월
天道教/경성부	金秉濟	보안법 위반	1932.5.31	기소유예
天道教/평남 덕천군	吳廷元	보안법 위반	1932.7.7	징역8월 집행유예 4년
天道教/평남 안주군	李〇〇	보안법 위반	1934.11.30	기소유예
天道教/평남 덕천군	李龍奎 외 4명	보안법 위반	1936.11.9	4명 기소유예, 1명 불기소
無極大道教/평양부	金賢範	보안법 위반	1932.4.19	징역 6월
靑林教/충남 예산군	金濟외 15명	보안법 위반	1931.1.30	징역 10월 이하
靑林教/충남 서산군	太斗燮	보안법 위반/詐欺	1935.10.7	징역 5년 이하
雲林教/충북 청주	鄭壽承	보안법 위반	1936.8.4	징역1년
仙道教/강원 평강군	金用河 외 4명	보안법 위반	1935.10.7	

21 「類似宗教の布教取締」, 《朝鮮新聞》, 1932년 6월 16일자.

조선총독부의 취체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교단 자체를 해소(解消)시키거나 ‘신설(新設)을 방지’하는 방식의 탄압은 1935년에 비로소 도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sup>22</sup>

따라서 1930년대 이후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은, ① 〈보안법〉제5조~제7조를 적용해서 개인을 ‘검거’ 또는 ‘기소’로 탄압하는 기존 방식의 강화와<sup>23</sup> ② 〈보안법〉제1조와 제2조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안녕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교단을 ‘탄압’하고 ‘해산’하는 방식의 도입<sup>24</sup>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됐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1930년대 초반 유사종교 탄압의 성향은 1920년대와 유사하게 사상경향의 취체에 주안을 두고 있었다.

시국(時局)의 긴장과 사상(思想) 관계 취체 대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무국(警務局)에서는 오는 六월 상순경에 동경 대판 등 특고과장(特高課長) 회의를 계획하여 조선에서도 각 도 경찰부 고등과장(高等課長) 회의를 소집할 터이란다. 이는 근래 처음 보는 회의이니만큼 그 결과가 자못 주목되거나 **금번 협의사항(協議事項)의 주요 요령은 종교류사단체(宗教類似團體)에 대한 사상적 경향의 취체를 주로 하고 다시 최근 각 도 농촌진흥운동(農村振興運動)에 침투하는**

22 「高等警察上刷新改善ヲ要スト認ムル事項如何」, 『道警察部長會議 諮問答申書』(조선총독부, 1935), 64쪽.

23 〈보안법〉 제5조는 “경무총장은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을 행할 염려가 유하다고 인(認)하는 자에게는 기 거주 처소에서 퇴거하기를 명하며 또 1개년 이내의 기한을 특정하여 일정한 지역에 범입(犯入)함을 금지함을 득함”이고, 제6조는 “앞의 5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40 이상의 태형 우(又)는 10개월 이하의 금고(禁獄)에 처함”이며, 제7조는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 동작 우는 타인을 선동 교사 혹은 사용하거나 우는 타인의 행위에 관섭하여 인하여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고 우는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이다.

24 〈보안법〉 제1조는 “경무총장은 안녕질서를 보지(保持)키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함을 득함”이며, 제2조는 “경찰관은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우(又)는 해산함을 득함”이다.

적색(赤色)잠행운동에 대한 취체책 등을 확립할 터이라 한다.<sup>25</sup>

1930년대 초반 일본제국을 뒤흔든 사상조류는 급증하는 좌익사상과 우익의 테러리즘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사유재산제도 폐지와 국체변혁을 주장하는 좌익을 통제하기 위해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의 개정을 서둘렀다면, 다른 한편으로 1932년 발생한 5·15 쿠데타 미수사건처럼 민족운동으로 발전하는 우익의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불법당여법(不法黨與法)의 제정을 서두르는 등 사상통제가 중요한 과제였다.<sup>26</sup> 민족운동과 좌익운동은 당시 한국사회에서도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인용문처럼 1934년 5월 일본에서 특고과장 회의가 열리는 것에 보조를 맞춰 경무국에서도 각도 고등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유사종교 취체와 적색운동 잠행운동 취체를 통한 사상통제가 주요 안건으로 등장한다.

1931년부터 시행된 농촌진흥운동은 일본의 대공황에 의해 조선 농산물이 폭락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일으키고 또 농촌을 무대로 적색노동조합운동이 확산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우가키(宇垣一成) 총독은 농가개생계획 실행을 명분으로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민족해방사상이나 사회주의사상을 억압하는 것으로 민족운동단체나 혁명조직을 무자비하게 검거하고 탄압했다.<sup>27</sup>

한편 아오노는 일제의 유사종교에 대한 통제의 방침이 적극적인 ‘탄압·해산’으로 변화되는 것은 농촌진흥운동의 연장에서 1935년 시행된 ‘심전개발운동’, 그리고 그 배경을 이루는 ‘내선융화’와 ‘황국신민정신’ 강화가 유사종

25 「宗教類似團體와赤色運動取締各道高等課長會議」, 《조선중앙일보》, 1934년 5월 8일자.

26 「극우익사상취체의 불법당여법 제정」, 《동아일보》, 1935년 1월 22일자.

27 이윤갑, 「우가키 가르시게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대구사학』 87(2007), 40-42쪽.

교 탄압을 '적극적 취체'로 전환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sup>28</sup> 논자는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일본제국은 1932년 3월 1일 만주국 건국을 강행하고, 1933년 3월 27일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후 세계열강의 비난을 받던 일본은 1934년부터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가키는 기존의 농촌진흥운동에 변화를 도모하는데, 그 하나는 일본의 국제사회 고립을 타개할 자급적 '일·선·만 경제블럭' 구축을 위해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토대를 확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경제블럭 구축을 원활히 하고 또 일본이 열강들에 대립하는데 필요한 '황국신민정신'을 강화하여 '내선융화'를 완성해 가는 것이었다.<sup>29</sup>

#### IV. 심전개발운동과 '유사종교 해산'의 연관성

우가키의 조선총독부가 '내선융화'와 '황국신민정신'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운동에서 특별히 역점을 둔 사업이 바로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 곧 종교부흥운동(宗教復興運動)이었다.<sup>30</sup> 우가키에 의해 제창된 심전개발운동은 종교가 개인의 신앙과 수행을 중시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와

28 青野正明, 앞의 책(2015), 325쪽.

29 이윤갑, 앞의 글(2007), 59-73쪽.

30 「更に心田開發! 愈よ本府学務局が乗出し宗教運動への準備」, 《京城日報》, 1935년 1월 31일자; 「宗教復興의 具体化協議」, 《매일신보》, 1935년 2월 2일자; 「心田開發の大方針に則り宗教復興運動へ」, 《京城日報》, 1935년 3월 1일자; 「종교부흥에 대한 一言」,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7일자; 「심전개발로 먼저 종교부흥」, 《부산일보》, 1935년 6월 2일자; 「心田啓發과 信仰向上 宗教復興에 全力傾注」, 《매일신보》, 1935년 6월 15일자.



천황을 개인의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두며, 종교적 신행보다 ‘국체(國體)의 본의’를 우선적으로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선도(善導)하는데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 방향이었다. 곧 농촌진흥운동은 자력개생의 물질적 측면과 심전개발운동을 통한 정신의 측면에서 민중을 조화롭게 지도하자는 것인데, 그 가운데 정신의 측면인 심전개발운동은 종교가 주체가 되어 대중의 정신을 황국신민정신 함양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심전개발운동은 형식적으로는 종교부흥운동이지만 실상은 종교가 자신들의 교리나 의례보다 ‘국체의 본의’를 설파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게 했다. 곧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황국)를 중심으로 하는 국체가 주(主)가 되고, 종교는 국체를 기반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이른바 ‘국가와 종교의 종속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다.

심전개발운동은 1935년 1월 우가키의 훈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sup>32</sup> 당시 우가키는 불교와 유교, 기독교, 신도를 대상으로 심전개발운동을 시행했으며, 특히 불교를 중심에 두었다.<sup>33</sup> 하지만 당시 조선불교계의 사찰내 비행(非行) 문제가 제기되며, 우선 불교계의 정화 곧 <사찰령>과 <경찰범 처벌규칙>에 의거한 조선 사찰의 단속 요구가 각 도지사에게 하달된다.<sup>34</sup>

31 「심전개발의 의의, 정신생활, 신앙생활으로의 향상」, 《부산일보》, 1935년 6월 20일자 참조.

32 김순석의 경우 심전개발운동이라는 개념이 1933년에 이미 존재했었다고 주장했다(김순석, 「193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의 ‘심전개발운동’ 전개와 조선불교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2000), 92쪽). 하지만 ‘종교부흥운동’으로서 심전개발운동이 본격 전개되는 것은 1935년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3 당시 총독부가 심전개발운동의 중심에 불교를 둔 이유에 대해서는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신계몽운동을 통한 식민통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6(2020), 423쪽 참조.

34 「お寺で飲酒は法度 殊に女づれの宿泊相협はず」, 《京城日報》, 1935년 6월 5일자; 「心田開發에 暗影주는 郊外寺刹의 墮落相 飲酒放歌密會等이 盛行하여 總督府서 禁止通牒」,

이에 각 도 경찰들에 의한 사찰 단속이 이뤄지면서 불교계 중심의 심전개발 운동은 착실하게 실행되어 간다.<sup>35</sup>

이와 더불어 1935년 4월 22-24일 조선총독부에서는 '도경찰부장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우가키는 정신작흥·자력갱생운동에 조선통치의 성패가 달렸다고 하면서 "운동의 중핵이 되는 정신을 심화시키기 위해 교육, 종교 등의 힘을 빌려서 이 나라 민중의 심지(心地)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sup>36</sup>라고 했다. 또한 경무국장은 「민간신앙의 선도취체에 대하여」라는 훈시를 통해 민간신앙과 종교유사단체에는 농촌진흥운동에 반항적 선동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 "종교적 풍속을 세련 미화해서 신앙심의 함양에 노력하며 또 미신을 점차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비쳐볼 때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들을 취체할 때에는 우선 사회생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면서 폐해를 일으키지 않는 단체를 선택해서 이들이 조장(助長)하고 선도에 힘쓰도록 함과 동시에 불량한 경향이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저지 또는 탄압을 가할 수 있도록 항상 유의"<sup>37</sup>하라고 했다. 이에 부응하여 당시 전라북도 경찰부에서는 다음의 개선·쇄신안을 제출한다.

---

《매일신보》, 1935년 6월 5일자: 「심전개발 점점 실행에 들어가, 먼저 사찰정화부터」, 《부산일보》, 1935년 6월 11일자: 「심전개발」, 《매일신보》, 1935년 6월 18일자: 「도내 70의 사찰에 심전개발의 탁발, 150의 승려에게 청정으로 돌아가라고, 경남당국 정화에 착수」, 《부산일보》, 1935년 6월 19일자: 「각사주지를 회합 사찰정화를 엄명 대동군의 심전개발운동」, 《매일신보》, 1935년 7월 14일자: 「각지에 제창되는 심전개발운동 정화홍룡 목표로」, 《매일신보》, 1935년 7월 16일자: 「심전개발 사원의 정화 드디어 실시」, 《부산일보》, 1935년 8월 5일자: 「地獄의 靈域을 濟度 寺庵의 淨化를 嚴命」, 《京城日報》, 1935년 6월 5일자 등.

35 임혜봉, 『친일불교론(상)』(민족사, 1993), 145-166쪽 참조.

36 「於道警察部長會議總督訓示」, 『道警察部長會議書類』(조선총독부, 1935), 29-30쪽.

37 「於道警察部長會議警務局長演示」, 『道警察部長會議書類』(조선총독부, 1935), 250-252쪽.

### 종교유사단체에 대한 취체 법규의 제정<sup>38</sup>

종교유사단체에 대해서는 종래 엄중한 취체를 가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운동을 계속하며 항상 포교라는 명분으로 지방의 우매한 농민을 상대로 감언이설로써 입교시키고 금품을 착취하여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 농민들을 더욱 궁지에 빠지게 하는 등 지금도 계속해서 실적을 올려가고 있음. 농촌진흥운동의 조장을 저해하는 움직임도 있는가 하면 민족의식을 선동하는 언동을 하는 등 폐해를 끼치는 곳이 적지 않음.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취체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종류의 단체에 활동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절박한 상황임. 핵심은 기성단체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활동 확대의 경제적 원동력이 되는 의금(義金) 성미(誠米) 등의 모집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엄격한 제재에 처하는 등의 단행(單行) 법규(法規)를 제정해서 취체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단체들이 자연히 해소(解消)되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신설(新設)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전북경찰부에 국한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지역 경찰에서 유사종교 취체에 관한 '법규'를 제정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고, 또한 그 취체의 방법으로 의금(義金)이나 성미(誠米) 모금을 금지함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가하여 교단을 해산시킨다는 구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 법규가 실제로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뒤에 실질적인 탄압과 해산이 이뤄지는 과정을 통해 볼 때 실제로 이 방침이 폭넓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가키 총독과 경무국장의 적극적 의지는 1935년 6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종교정화'와 더불어 종교유사단체에 대한 적극적 탄압을

38 「高等警察上刷新改善ヲ要スト認ムル事項如何」, 『道警察部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조선총독부, 1935), 76쪽.

방침으로 하는 회의로 이어진다. 경무국 고등과장 회의로는 1934년 5월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주요 안건은 ‘유사종교와 무당배의 철저한 탄압’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심전개발이니 종교정화이니 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오는 십일 오전 9시부터 총독부 사회과에서 엄사회과장의 주재로 이들 취체에 관한 중요회의를 열기로 되었다 한다. 이 회의에 출석할 인원은 사회과의 관계직원과 경무국의 보안과장, 경무과장, 관계 각 사무관, 계원 등과 경기도로부터서도 보안과장, 고등과장, 학무과장 등인바 **중요의제는 종교의 정화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경무국으로부터서 종교유사단체의 철저적 취체 방침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본적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사찰의 정화를 꾀하고 동시에 자칫하면 정치운동이나 사상운동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종교유사단체의 적극적 탄압과 취체를 하기로 하고 겸하여 무당배의 철저한 소탕 방침도 확립할 터이라하여 그 귀결이 극히 주목된다.<sup>39</sup>

종교유사단체에 대한 탄압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학무국 사회과에서 주재했는데, 이는 종교에 대한 업무와 심전개발운동을 주도한 것 역시 사회과였기 때문이다.<sup>40</sup>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사회교화를 위한 정신작흥(精神作興) 운동이나<sup>41</sup> 조선인 백의(白衣) 착용의 폐해를 주장하고 단발을 강요하는 등 한국의 풍속과 관습을 구폐(舊弊)로 규정하고 폐지하는 역할 역시 사회과의 주요 업무였다.<sup>42</sup>

이 회의는 심전개발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교계의 정화와

39 「종교유사단체를 엄중취체할 방침」, 《동아일보》, 1935년 6월 7일자.

40 「심전개발공작전제로 민간측 의견청취」, 《매일신보》, 1935년 7월 16일자.

41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 編, 『自力更生を目指して』(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 1930), 1-8쪽.

42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 編, 『色服と斷髮』(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 1933), 1-8쪽.

유사종교의 적극적 탄압, 무당의 철저한 소탕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비로소 유사종교에 대해 ‘철저한 취체’나 ‘적극적 탄압’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탄압의 수준이 훨씬 강화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의 이유로 ‘근본적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그와 동시에 유사종교가 정치운동이나 사상운동으로 흐를 위험성도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곧 유사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은 그 이유가 심전개발운동을 통한 종교계의 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상운동이나 정치운동의 발호를 차단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후 1935년 12월, 처음으로 경무국이 종교유사단체에 ‘총철폐령’을 내릴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sup>43</sup>, 뒤이어 1936년부터 총독부는 심전개발운동을 더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그 측면 공작으로서 반드시 미신단체를 처리해야 할 방침을 다시 제시한다.

총독부에서는 물심(物心) 양면의 향상 즉 자력갱생(自力更生) 운동과 아울러 심전개발(心田開發) 운동을 역행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명년부터 더운 철저히 하기로 되어 위선 **심전개발운동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피해가 만하여오든 민심을 미혹케하는 미신단체를 철저히 취체하기로 되었다.**<sup>44</sup>

총독부에서는 민심을 현혹하는 미신단체를 ‘철저히 취체’하는 방침이 심전개발운동의 ‘측면공작(側面工作)’임을 밝힌다. 다만 1935년 1년 동안 심전개발운동 실시를 위해 총독부와 종교계 관계자들 사이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의 준비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심전개발운동에 돌입하

43 「종교유사단체에 철폐, 필두는 보천교 소탕」, 《동아일보》, 1935년 12월 19일자.

44 「心田開發側面工作으로 迷信團體撲滅爲計」, 《매일신보》, 1935년 12월 25일자.

게 되는 1936년부터 총독부는 미신단체 곧 유사종교에 대한 '철저한 취체'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一般 民衆의 精神을 作興하고 農山漁村의 作興을 圖함에는 宗教的 信念을 涵養하여 確乎한 人生觀을 樹立케 할 必要가 잇슴을 痛感하여 宇垣總督은 昨春 以來 心田開發을 提唱 高調하여 왔거니와 昭和十一年부터 이에 對한 諸般施設에 一層 用力을 하게 되었는데 朝鮮은 往古 佛敎가 크게 殷盛하여 上下를 通하여 民衆의 信仰心 培養上 多大한 供獻을 하여 왔스나 李朝中葉에 이르러 佛敎의 餘弊가 各 方面에 簇生하게 됨에 政府는 이것을 匡救하기 爲하여 佛敎에 對하여 極端의 彈壓을 加한 結果 佛敎는 漸次 衰微하여지고 人心은 甚히 荒廢하게 되었을뿐 아니라 이 弊端에 乘勢하여 一面 雜多의 迷信의 宗教 類似의 敎義가 人心을 蠱毒하게 되었으므로 民衆을 正道의 信仰으로 引導하여 安心立命을 어더 生業에 忠實케 하고저 總督府에서는 昭和 十年 一月 以來 數回에 난호어 神道, 儒敎 其他 各種 宗教 關係者를 召集하여 意見을 交換하고 心田開發의 施設事項 案에 對하여 意見을 交換하여.....<sup>45</sup>

당시 언론에서는 심전개발운동을 통해 종교적 신념으로 바른 인생관을 수립해야 한다는 우가키의 방침을 반복적으로 보도한다. 특히 불교가 점차 세력을 잃게 되면서 '잡다한 미신적 종교'와 '유사한 교의'가 인심에 해독을 끼쳐왔으므로, 민중을 정도(正道)의 신앙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곧 미신과 유사종교에서 불교의 바른 신앙으로 전환시켜 가야 한다는 논조로 유사종교와 미신적 종교에 대한 탄압의 여론을 환기시킨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동향과 조선총독부의 '철저한 취체'의 방향이 드디어 유사종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교단의 해산'이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드러내는

---

45 「更生의 根本義는 心田開發에서부터 宗教振興을 中心으로」, 《매일신보》, 1936년 1월 1일자.

것이 1936년 6월 보천교와 무극도 등 증산계 교단에 대한 탄압과 해산이다.

大本教 撲滅을 完了한 警務當局에서는 心田開發運動의 順調로운 發展을 助長하여 宗教에 名을 籍하여 進擊한 精神運動을 沮害하는 宗教類似團體를 順次로 整理함이 緊要함을 認定하고 既報한 바와 가티 今月 下旬에 開催하는 各道 警察部長會議에 次의 協議事項으로서 提案하고 各道 警察部長의 意見을 求하여 具體案을 樹立하기로 되었는데 目下 朝鮮 내에 있는 宗教類似團體는 警務局 保安課의 照査에 依하면 天道教, 侍天教, 上帝教, 普天教, 東華教 等 六十團體에 達하고 그 信徒 十五萬을 算하여 其中에는 良民의 膏血을 搾取하여 宗教의 信仰을 誤케 하는 弊害도 顯著한 者 잇서 此等은 順次로 整理함과 同時에 心田開發運動의 機會를 타서 此를 惡用하는 諸種의 團體 等도 嚴重히 監視 取締할 意向이다.<sup>46</sup>

來二十九日부터 三日間 開催되는 各道 警察部長會議는 田中警察局長이 就任한 後 第一會의 會議인 만치 從來의 方針에 新局長 抱負를 加味하여 特色있는 會議가 될 模樣인데 그 中心問題는 現下 非常時局에 警察行政의 大策을 비롯하여 外事警察의 擴充에 對한 것과 各地에서 跋扈하고 잇서 世道人心을 迷惑하게 하고 잇는 宗教類似團體를 徹底히 取締團束할 것에 대한 것과 또는 警察事務를 敏活케 하기 爲하여 各道의 報告와 連絡에 對한 簡易化, 警察官의 生活에 直接影響이 잇는 共濟組合豫算에 關한 事項 等を 協議하기로 되었다.<sup>47</sup>

이 두 기사는 1936년 6월 5일자 《매일신보》의 2면에 나란히 게재된 것이다. 1935년 일본에서는 제2차 오모토교(大本教) 탄압이 있었고, 그 영향은 국내에 있던 오모토교 관련 단체(人類愛善會) 해산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 작업이 종료된 후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심전개발운동의 순조로운 발전을

46 「類似團體 跋扈는 心田開發運動을 妨害」, 《매일신보》, 1936년 6월 5일자.

47 「非常警備의 擴充과 宗教類似團體의 一掃」, 《매일신보》, 1936년 6월 5일자.

저해하는 유사종교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렸다는 것이며<sup>48</sup>, 각도 경찰부장은 이 지침을 받아 유사종교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갈 구체 방침을 강구하게 된다.<sup>49</sup> 유사종교에 대한 해산 명령이 총독부 경무국에서 일선 경찰부로 직접 하달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과 해산이 총독부의 직접적인 주도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보천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는 후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경무국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천교(普天教) 검거사건에 대하여 전중(田中) 경무국장은 다음과 가티 말하였다. 금번 보천교 검거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즉 보고를 빗지 아니하여 알 수 업스나 전 정판(井坂) 전북경찰부장과 현 실전(室田) 경찰부장에게 **보천교는 불온한 사상을 가질 염려가 있스니 잘 취체하라고 내명을 한 바 잇섯는데 금번 제一차 검색을 보게 된 것 갓다.** 이번 사건의 취조 진행에 따라서는 혹시 제二차의 검색까지 잇게 될는지도 알 수 업다.<sup>50</sup>

유사종교 해산은 1936년 4월 23일 경무국장으로 취임한 다나카의 첫 번째 성과였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종교 해산은 심전개발운동을 적극 추진하려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으로 이어져 온 것이며,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겨 무극도와 보천교 등 증산계 교단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과

48 다나카(田中)를 경무국장이 아닌 경찰국장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오기(誤記)로 보인다.

49 오모토교 해산이 국내 유사종교 해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본고의 논의 방향에서 논자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시국의 변화에 따라 국가에서 '사교'를 '취체'한다는 방향에서 그 일체의 종교탄압이라는 근본 방향의 측면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운 논의를 기대한다.

50 「普天教 檢索에 對한 田中警務局長談」, 《매일신보》, 1936년 6월 11일자.



해산을 강행한 것이 다나카 경무국장이었다.

이상과 같이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은 심전개발운동을 기점으로 '취체'에서 '해산'으로 그 기조가 전환된다. 또 유사종교 해산은 심전개발운동을 담당했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주도로 각도 경찰부장과 구체 방침을 협의했으며, 그 방침을 토대로 각 지역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해 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법령은 없었으나, 조선총독부에서 유사종교 해산을 지시했다는 것과 이를 위한 지역 경찰서의 해산 지침이 존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와 경찰부장 회의에서는 유사종교 해산의 방침을 어떻게 수립했으며, 실제 탄압과 해산은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 무극도를 사례로 유사종교 해산의 실상을 알아보자.

## V. 무극도의 사례로 본 '유사종교 해산'의 실상

무극도에 전북경찰에 의한 대대적인 탄압의 풍파가 몰아친 것은 1935년 이었다. 이에 대해 『태극도주 조정산 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35년) 12월에 조선총독이 전북지사 고원훈(高元勳)을 도주님께 보내어 친서를 전달하고 감언이설로 내선일체와 황민화정책에 동조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대하여 도주님께서서는, "이런 일은 그대가 아니고 일본 왕이 직접 와서 말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니 총독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하고 단호히 거절하셨다. 그러나 지사는 그 후에 다시 와서 비상시국을 말하며 당국의 정책에 협조할 것을 재삼 간청했지만, "나는 이미 도단을 해산하고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으니 다시는 도에 대한 일을 거론하지 말라"하고 전일보다 더욱

완강하게 거절하셨다. 지사는 결국 공문으로 그들이 말하는 ‘종교단체해산령’을 전하고 무극도의 해산을 통고했다.<sup>51</sup>

조선총독이 당시 전북지사를 조철제에게 보내 친서를 전달했고, 도지사가 당국의 정책 협조를 위해 재삼 간청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무극도 관련 기사는 주로 ‘혹세무민’이나 ‘사이비종교’, ‘유사종교’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총독과 전북지사가 무극도에 호의적이었다거나 공인종교와 동등한 대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힘들다.

특히 도지사가 공문으로 ‘종교단체해산령’을 전하여 무극도의 해산을 통고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무극도 해산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공문으로 통고했음은 의문이다. 이는 보천교를 포함하여 당시 탄압으로 교단을 해산시켰던 경찰의 일반적인 방법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공문으로 ‘종교단체해산령’을 전했다는 표현 자체가 유사종교해산령(또는 종교단체해산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전국 경찰 고등과장 회의에서 각 지역의 유사종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각 지역 경찰에서 실질적인 탄압과 해산을 가한 것일 뿐, 총독부에서 규정이나 공문을 통해 특정 교단의 해산을 명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만일 ‘공문’에 의해 ‘종교단체해산령’을 내렸다면, 이는 당시 총독부에서 유사종교를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sup>52</sup>

하지만 일제의 무극도에 대한 탄압과 해산 방침이 1935년 12월에 시작된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은 조철제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

51 태극도 편찬원, 『태극도주 조정산전기(자료편)』(태극도출판부, 1992), 60-70쪽.

52 고병철, 앞의 책(2019), 390쪽.

벌금형을 받은 것이었다. 당시 주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무극도와 조철제의 비도덕성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처럼 폭로했는데, 무극도 해산과 관련한 다음 기사가 이목을 끈다.

조천자는 이번 기회에 자기의 난잡한 생활 이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또 동교의 간부 계급에서 재산을 중심으로 알뜰이 심해가는 터이다. 이런 것을 피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한다. 전북경찰부에서는 만일 경우에는 해산이라도 시키려고 조사하였든바 교지(敎旨)에는 별로 저촉되는 점이 없으므로 적극적 행동은 취하지 안홀 작정이나 동교는 이미 내부적으로 분규가 있어 일로 와해의 길을 밟고 잇는 터이라 그때를 기다리고 잇을 터이며 앞으로도 동교를 중심으로 고소사건이 일어나면 철저히 조사할 터이라 한다.<sup>53</sup>

위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당시 전북경찰부에서 무극도를 해산시킬 의도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유사종교에 대해 총독부와 경찰이 단속과 탄압을 가한 가운데 특정 교단을 ‘해산’시키고자 했던 사례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무극도의 교리에서 법에 저촉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나, 적극적으로 교단의 해산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내분으로 와해될 조짐이 있다는 점에서 관망적 자세로 돌아선다. 하지만 이후 재차 고소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단을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경찰에 의해 교단이 강제적으로 ‘해산’당한 최초의 사례가 보천교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지만 위 기사를 통해 전북경찰부가 보천교와 더불어 적극적

---

53 「愛慾과 物慾의 生活로 瓦解될 無極大道教」, 《동아일보》, 1936년 1월 16일자.

으로 해산시키고자 했던 교단이 무극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무극도를 강력히 취체해야 할 사교(邪敎) 집단으로 몰아갔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성격의 《매일신보》에서는 1936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소위무극도요괴상(所謂無極道妖怪相)〉이라는 제목으로 총11회에 걸쳐 무극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sup>54</sup> 당시 유사종교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지목되던 보천교도 이런 연속 보도를 통해 탄압을 한 경우는 없었다. 무극도 해산을 향한 조선총독부와 언론의 탄압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강화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전북경찰이 실질적으로 교단 해산을 단행한 것은 보천교로, 그 시작은 1936년 6월 11일이었다. 5월 30일 차경석의 사망 이후 불과 10일이 지난 시점에 보천교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한 경찰은 그 다음 순서로 무극도, 증산교, 동화교 등에 순차적으로 탄압을 가하는데, 6월 16일 오전 11시경 경찰은 조철제를 정읍경찰서에 호출하여 포교, 성금, 집회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의 단발을 명령한다.<sup>55</sup> 이어 6월 23일 안동경찰부에서는 안동에 소재한 경북무극대도교선정부(慶北無極大道敎宣正府)의 집회 금지를 명하는 등 지역에 소재한 무극도 지부로 탄압의 범위를 확장한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이 시점에 무극도의 해산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54 「所謂無極道極惡相(1)」, 《매일신보》, 1936년 1월 26일자; 「所謂無極道妖怪相(2)」, 《매일신보》, 1936년 1월 31일자; 「所謂無極道妖怪相(4)」, 《매일신보》, 1936년 2월 5일자; 「所謂無極道妖怪相(5)」, 《매일신보》, 1936년 2월 6일자; 「所謂無極道妖怪相(6)」, 《매일신보》, 1936년 2월 7일자; 「所謂無極道妖怪相(8)」, 《매일신보》, 1936년 2월 9일자; 「所謂無極道妖怪相(9)」, 《매일신보》, 1936년 2월 11일자; 「所謂無極道妖怪相(11)」, 《매일신보》, 1936년 2월 14일자. 총 11회 연재로 나오는데, 3회는 신문에 실린 적이 없고 7회와 10회의 경우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에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경인문화사의 영인본 《매일신보》에는 1936년 2월 8일-5월 5일 사이가 누락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55 『無極道에도 鐵鎚』, 《매일신보》, 1936년 6월 18일자.

다만 이런 탄압이 조선총독부의 명령에 의해 일괄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며, 각 지역 경찰에 의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당시 전북경찰부에서는 무극도에 강한 탄압을 가하여 자발적으로 해산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이 스스로 해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궁지로 몰아넣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것은 경찰이 조철제를 호출하여 명령한 바와 같이 첫째, 모든 포교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며(布教禁止), 둘째,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며(集會禁止), 셋째, 어떤 형태로든 교도에 의한 기부행위를 금지(收金禁止)하는 것이었다. 집회(集會), 수금(收金), 포교(布教)는 당시 종교 활동의 기본이었는데, 경찰이 이 세 가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시켰다는 것은 유사종교를 종교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런 방식은 앞서 전북경찰부에서 제시했던 '법규'의 기본 방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당시 전북경찰이 유사종교 탄압과 해산을 위한 기본 방침을 이미 정해놓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수금의 금지는 교단 구성원의 생활을 빈궁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탄압 방식은 많은 증산계 교단 해산에 적극 활용된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렇게 교단을 해산시켜서 얻고자 했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사종교에 속해 있던 교도들의 탈교(脫敎)와 전교(轉敎), 또는 개종(改宗)이었다. 예를 들면 “종교유사단체가 만흔 충남도에서는 보천교를 탄압 해산시키는데 자극되어 전전공금하는 중 스스로 내용을 고치어 불교(佛敎)화 하는 교도 있다 하며 당국에서는 공안에 피해가 있는 외에는 선도할 방침으로 점차 전향을 시키는 중<sup>56</sup>”이라는 보도로 알 수 있듯이, 당시 총독부의 유사종교 탄압과 해산 방침이 ‘심전개발운동’을 통한 ‘종교부흥운동’에

---

56 「보천교 강압에 자극, 유사교 등 전전공금」, 《동아일보》, 1936년 7월 10일자.

있었으며, 따라서 유사종교에 사로잡혀 있던 민중들이 그 굴레를 벗어나 바른 종교의 신앙에 귀의하며, 이를 통해 ‘국체의 본의’인 ‘황국신민정신’을 확립하는데 있었다.

당시 언론들도 무극도와 보천교 탄압을 ‘사교탄압(邪敎彈壓)’으로 보도하면서 “조선 내의 사교단체도 일체 철폐를 가하여 혹세무민하는 무리를 근절하여 심전개발에 명랑화를 철저히 하리라”<sup>57</sup>라거나, “심전개발(心田開發) 운동에 장애가 심한 바가 잇서 경무국에서는 사교(邪敎) 단체의 탄압을 철저히 하고 있는 중”<sup>58</sup>이라는 등 유사종교 교단의 해산을 심전개발운동의 원활한 진행과 연계하는 기사와 더불어 유사종교에 몸담았던 이들의 탈교가 줄을 잇는다는 보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탈교를 주장했지만 사실 무극도의 교도들은 지하로 잠입하여 신앙 활동을 이어가고, 보천교의 경우도 여러 분파로 나뉘는 후 지하로 숨어들어 교단 재건을 위해 움직여 간다. 오히려 경찰에서는 유사종교의 강제해산으로 교도들이 지하로 숨어든 후, 유사종교의 실상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된다.<sup>59</sup> 결과적으로 당시 언론에 보도된 ‘탈교’가 경찰이 원하는 기성종교로의 ‘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또 실제로 ‘개종’한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VI. 맺음말

---

이상 ‘유사종교해산령’이 법령은 아니며, 유사종교 해산은 총독부 학무국

---

57 「전북경찰부 俄然活動 보천교 全幅的 檢索」, 《매일신보》, 1936년 6월 11일자.

58 「秋風落葉, 普天敎 殘黨 最後의 哀願泣訴」, 《매일신보》, 1936년 6월 28일자.

59 「思想犯罪から觀た最近の朝鮮在來類似宗教」, 『사상회보』 제22호(1940), 19쪽.

사회과와 각도 경찰부장이 기획하고, 일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총독부는 유사종교의 해산이 종교부흥운동을 통한 심전개발운동이라는 명목을 전면에 내걸었다. 종교를 통해 한국인에게 ‘황국신민정신’을 양성하며, 이를 통해 ‘내선융화’를 완성해 가려는 의지가 깊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유사종교 해산은 식민지 조선의 모든 종교를 ‘국체명징’이라는 이름 아래 일괄적으로 통제하려는 총독부의 의도가 있었으며, 나아가 한국인을 황국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방침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사종교해산이 민족운동이나 민족정신을 지닌 단체를 원천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민족종교 탄압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국체명징과 황국신민정신의 배양을 지향하는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민족적인 요소가 농후한 토착신앙이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 유사종교를 ‘미신사교’로 규정하고 해산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상통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시기에 유사종교로 규정되던 종교단체가 생존하는 방법은 기성종교와 동일하게 국체를 수용하고 충량한 신민으로서 ‘심전개발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널리 선포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무극도나 보천교처럼 교단을 해산당하고 지하로 들어가 암암리에 신앙을 유지하는 길 외에 다른 방도는 없었다. 1935년부터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까지 10여년의 시간은 해산당한 교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교단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사종교 교단에 있어서도, 또 기성종교에 있어서도 국가에 의해 종교와 신앙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짓밟힌 암울한 시기였던 것이다.

한편, 무극도의 경우 1936년 정읍 본부가 해체된 후, 교단이 완전히 해산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본부 해산 이후에도 각 지방에서는 일부 교도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60</sup> 곧 무극도는 교단

60 「(心田開發實を結ぶ)類似宗教の没落」, 《京城日報》, 1937년 3월 27일자에 보면 경상북

본부가 해체됨으로써 표면적으로 교단이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지부들이 활동을 지속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에서 1941년 일제가 강화된 치안유지법에 의해 무극도가 완전히 해산되었다는 주장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937년 이후 백백교 탄압이나 그 이후의 상황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대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도 지역의 무극도 교도는 682명의 탈교자가 있었으나 여전히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於道警察部長會議總督訓示」. 『道警察部長會議書類』, 조선총독부, 1935.

「於道警察部長會議警務局長演示」. 『道警察部長會議書類』, 조선총독부, 1935.

「高等警察上刷新改善ヲ要スト認ムル事項如何」. 『道警察部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조선총독부, 1935.

「思想犯罪から見た最近の朝鮮在來類似宗教」. 『사상휘보』 제22호, 1940.

《京城日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釜山日報》, 《朝鮮新聞》, 《朝鮮中央日報》.

### 2. 단행본

고병철,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박문사, 2019.

노길명 외, 『한국민족종교운동사』. 한국민족종교운동사, 2003.

성주현,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선인, 2013.

이경원, 『한국신종교와 대순사상』. 도서출판문사철, 2011.

임혜봉, 『친일불교론(상)』. 민족사, 1993.

태극도편찬원, 『태극도주 조정산 전기(자료편)』. 태극도출판부, 1992.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犯罪と環境』. 京城: 朝鮮總督府, 1928.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 編, 『自力更生を目指して』. 社會教化資料 第3輯, 朝鮮總督府  
學務局社會課, 1930.

\_\_\_\_\_, 『色服と断髮』. 社會教化資料 第2輯, 朝鮮總督府學務局社  
會課.

青野正明, 『帝國神道の形成』. 東京: 岩波書店, 2015.

\_\_\_\_\_, 『植民地朝鮮の民族宗教』. 京都: 法藏館, 2018.

### 3. 논문

김순석, 「193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의 '심전개발운동' 전개와 조선불교계」.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25, 2000, 83-116쪽.

김택, 「무극대도의 예언사상과 특성」. 『태인 무극대도의 역사·문화적 회고 및

- 전망』,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러시아아gro상생연구소, 2019, 84-177쪽.
- 문상희, 「한국의 신흥종교」. 한국종교사학회 편, 『한국종교』,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3, 299-345쪽.
- 박광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사회 종교지형의 변화」.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한국신종교의 사회운동사적 조명』, 집문당, 2017, 1-35쪽.
-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의 연구: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신계몽운동을 통한 식민통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6, 2020, 407-439쪽.
- 윤이흠, 「일제강점기의 민족종교운동」. 『한국민족종교운동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03, 165-221쪽.
- 이강오, 「보천교」. 『논문집』 8호, 전북대학교, 1966, 9-81쪽.
- 이경원, 「한국 근대증산교단의 민중·민족운동」.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2, 2012, 137-183쪽.
- 이윤갑,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대구사학』 87, 2007, 33-80쪽.
- 이현택, 「증산교」. 『한국종교』 8,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83, 251-276쪽.
- 홍범초, 「증산계 삼덕교」. 『한국종교』 11·12, 1987, 177-225쪽.

## 국문초록

한국 근대종교 연구에 있어서 ‘유사종교해산령(類似宗教解散令)’은 일제에 의한 한국 신종교의 탄압과 해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로 자리잡아 왔는데, 사실 이 ‘유사종교해산령’은 법령의 형태로 존재한 적이 없다. 본고에서는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1990년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며, 그 이후 연구자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착됐고, 그 배경에는 일제에 의한 민족종교의 탄압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밝혔다.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용어가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일제에 의한 유사종교 탄압과 해산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했고, 실질적으로 1935년 이후 유사종교 해산이 이뤄지는 1936년 총독부와 경찰, 그리고 언론의 동향을 고찰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제의 유사종교 해산의 배경에 민족종교에 대한 탄압의 목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선총독부가 심전개발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유사종교 해산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은 심전개발운동을 기점으로 ‘취체’에서 ‘해산’으로 그 기조가 전환된다. 또 유사종교 해산은 심전개발운동을 담당했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주도로 각도 경찰부장과 구체 방침을 협의했으며, 그 방침을 토대로 각 지역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해 갔다. 또한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법령은 없었으나, 조선총독부에서 유사종교 해산을 지시했다는 것과 이를 위한 지역 경찰서의 해산 지침이 존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고는 ‘유사종교해산령’이 실체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실질적인 유사종교 해산은 총독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 기획하고 각 지역 경찰부에서 상황에 맞게 탄압과 해산을 실시해 갔다는 것, 그리고 무극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유사종교의

포교, 집회, 수금을 금지하는 등 종교적 활동을 일체 금지시킴으로써 스스로 해산할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몰아가는 탄압의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21. 9. 8.

심사일 2021. 9. 8.

계재 확정일 2021. 11. 10.

주제어(keyword) 유사종교해산령(類似宗教解散令, Dissolution Decrees of Pseudo-Religions),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 Simjeon Development Movement), 무극도(無極道, Mugeukdo), 내선일체(內鮮一體, Integration of Japan and Korea), 보천교(普天教, Bocheongyo)

## Abstract

### A Study on the Truth of 'Dissolution Decrees of Pseudo-Religions': Focusing on the Cases of 'Mugeukdo(無極道)' Kwon, Dong-woo

In studies on Korean modern religions, 'the Dissolution Decrees of Pseudo-Religions (類似宗教解散令)' has been established as an important term to explain oppression and dissolution of Korean new religions by the Japanese Empire. Actually, 'the Dissolution Decrees of Pseudo Religions' never exists in the form of laws. This thesis clarified that the term and concept of 'the Dissolution Decrees of Pseudo-Religions' were suggested in earnest in the compilation of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in 1990s and were settled in the process that later researchers accepted them thoughtlessly and the Japanese Empire had its hidden intention to emphasize oppression of national religions in the background. The point that the term of 'the Dissolution Decrees of Pseudo Religions' was recently created does not mean that the Japanese Empire did not oppress and dissolve pseudo-religions. The thesis raised a question about this and practically studi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policemen, and trends of the press in 1936 that the pseudo-religions were dissolved after 1935. And as a result, it could be found that oppression of national religions cannot be absolutely ruled out from the Japanese Empire's background to dissolve the pseudo-religions, bu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egan the dissolution of the pseudo-religions in earnest with the development of Simjeon(心田) Development Movement.

Through this study, the thesis could be found that 'the Dissolution Decrees of Pseudo-Religions' was intangible, the practical dissolution of pseudo-religions was not done in a lump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t planned by the Social Affairs Division of it and executed by each local police department according to match the situation, and they applied the oppression method to force religious groups into a corner so that they could not help being dissolved by themselves by prohibiting them from doing religious activities including bans on propagating, assembly, and collection of money through an example of Mugeukdo.

